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8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박성중・홍문표・송석준

박덕흠 • 이명수 • 태영호

박대출 • 유경준 • 백종헌

홍준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중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을 시공자등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정비사업의 취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공자등의 손실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	손금산입) ①
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u>2020년 12월 31</u>	<u>2022년 12월 31</u>
<u>일</u> 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u>일</u>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	
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